

## 군산시공고 제2014-1328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4-1056호, 2014.6.30)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재입법예고 사유

- 기 입법예고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5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인 생산녹지지역내 문화집회시설(나목 및 라목) 항목추가
- 나.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관련시설에 단서조항 추가

### 4. 재입법 예고기간 : 2014. 9. 1 ~ 2014. 9. 22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02, F.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양종호 (063-454-3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시설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호 가목을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1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3.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3.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4-1331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군산시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안 제3조)

- (1)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자
  - (가)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자녀 중 1명
  - (나) 전상군경·공상군경 사망시 미망인
  - (다) 무궁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 (2) 제외자
  - (가)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 수령자
  - (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외자로 통보된 자
- (3) 지원액 : 1인 월 50,000원

### 나. 지급 신청(안 제4조)

- (1) 보훈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시장에게 직접신청

### 다. 수당 지급(안 제5조 및 제6조)

- (1) 신청한 달로부터 분기별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지급(소급불가)
- (2)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여부 확인 후 지급결정

### 라. 지급 중지(안 제7조)

-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진출
-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 리.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8조)

- (1) 지급 대상자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변동자료 파악

##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454-3065, 팩스 454-30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전화 454-3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훈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중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외자로 통보된 자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 규정에 따른 보훈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의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94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8. 25.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대명 현대메트로타워2차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1) 명 칭 : (유)현대주택건설

2) 대표자 : 조성석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59, 현대한솔@ 101호

####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의 37필지

나. 주택구분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나. 대지면적 : 26,247.1000m<sup>2</sup>(변경없음)

다. 건축면적 : 18,746.9723m<sup>2</sup>(변경없음)

라. 연 면 적 : 145,976.4663m<sup>2</sup>(변경 감 686.6030m<sup>2</sup>)

마.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30~40층, 아파트 5동 942세대

- 전용 84.9800m<sup>2</sup> 308세대

- 전용 84.9648m<sup>2</sup> 316세대

- 전용 84.9303m<sup>2</sup> 318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69,459,600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2. ~ 2016. 9.

#### 4. 사업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유)현대주택건설	변 경 없 음	
건축위치	군산시 대명동 385-1외	변 경 없 음	
대지면적	26,247.10m <sup>2</sup>	변 경 없 음	
사업기간	2013. 02 ~ 2016. 09	변 경 없 음	
사 업 비	169,459,600천원	변 경 없 음	
건축면적	18,746.9723m <sup>2</sup>	변 경 없 음	
연 면 적	145,976.4663m <sup>2</sup>	145,289.8633m <sup>2</sup>	감 686.6030m <sup>2</sup>
건 폐 율	71.42%	변 경 없 음	
용 적 율	424.05%	424.31%	증 0.26%
주 차 장	총 1,205대	총 1,206대	증 1대

5.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 2014년 8월 22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96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18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5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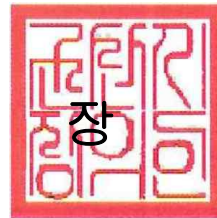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14-1281호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으로부터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군산시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 8. 19.

군 산 시



- 사 업 명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열 람 기 간 : 2014. 8. 19 ~ 2014. 9. 3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군산시 시청로 17), ☎ 063-454-3504
- 의견제출기간 : 2014. 8. 19 ~ 2014. 9. 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북 군산시 미룡동 208-1번지 등 총 43필지 (19,776.0㎡)
  - 토지소유자 : 고성녀(서울시 사당동 1139 사당LG아파트 104동 1502호) 등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 공고 2014 - 1325호

##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8. 29.

##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560번지 외 16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내용 : L=0.193km, B=6m
  - 명 칭 :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 다. 사업기간 : 2014. 10. ~ 2015. 2.
-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2. 보상대상

- 가.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일체(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4. 8. 29 ~ 2014. 9. 11(14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063-454-3602)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4.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4. 9월 이후부터 보상협의예정
-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	리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회현	대정	559-3	도	22	22	회현면 대정리 573	김옥식				
2	회현	대정	560	답	4,795	604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거산황궁맨션 104동 901호	김태범				
3	회현	대정	558-3	도	26	5	옥산면 금성리 34	고오봉				
4	회현	대정	561-2	도	69	36	옥산면 금성리 65	김승수				
5	회현	대정	569-2	도	20	12	옥구군 미면 둔율리 725	조영윤				
6	회현	대정	566-2	도	162	13	옥산면 금성리 57	강용산				
7	회현	대정	562-3	도	13	13	회현면 대정리 573	김옥식				
8	회현	대정	563-3	도	34	34	회현면 대정리 573	김옥식				
9	회현	대정	564-2	도	3	3	박면 박1리	강운숙				
10	회현	대정	564-3	도	32	32	회현면 대정리 573	김옥식				
11	회현	대정	565-2	도	17	17	박면 박1리	강운숙				
12	회현	대정	565-1	답	50	50	회현면 대정리 573	김옥식				
13	회현	대정	562-2	도	13	13	옥산면 금성리 34	고오봉				
14	회현	대정	530-3	도	17	17	옥산면 금성리 34	고병창				
15	회현	대정	530-2	답	4,809	93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98, 102동 904호(동서학동,거산황궁맨션)	고경희	근저당 권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14(전주지사무소)	전북인삼 협동조합	
16	옥산	금성	32-2	도	321	27	회현면 대정리 568	두홍내				
17	회현	대정	560-1	도	39	39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 98(포일동)	한국농어 촌공사				

군산시 공고 2014 - 1326호

##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옥서면 장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8. 29.

##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위치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1-9번지 외 29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내용 : L=138.0m, B=6m
  - 명칭 : 옥서면 장원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 다. 사업기간 : 2014. 10. ~ 2015. 2.
-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2. 보상대상

- 가. 옥서면 장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일체(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4. 8. 29 ~ 2014. 9. 11(14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063-454-3602)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4.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4. 9월 이후부터 보상협의예정
-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 5. 기타사항

-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옥서	선연	41-9	대	163	58	옥서면 선연리 137-2	송인성				
2	옥서	선연	114-3	도	10	10	옥서면 선연리 199	한서암				
3	옥서	선연	114-2	답	1,673	27	옥서면 선연리 115	한송희				
4	옥서	선연	37-7	전	662	20	옥서면 선연리 519	박중례	근저당권	옥구읍 선제리 509-7(옥봉지소)	옥구농업협	
5	옥서	선연	37-2	대	365	18	옥서면 선연리 519	박중례	근저당권	옥구읍 선제리 509-7(옥봉지소)	옥구농업협	
6	옥서	선연	37-5	도	116	116	옥서면 선연리 519	고태산				
7	옥서	선연	37-6	도	53	3	옥서면 선연리 519	고태산				
8	옥서	선연	37-14	대	137	15	옥서면 선연리 519	박중례	근저당권	옥구읍 선제리 509-7(옥봉지소)	옥구농업협	
9	옥서	선연	33-2	도	30	30	옥서면 선연리 32-1	장덕술				
10	옥서	선연	37-1	대	261	18	옥서면 옥봉리 147	이성룡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촌동 292-3	(주)대우캐피탈	
11	옥서	선연	32-3	도	30	30	옥서면 선연리 32-1	장덕술				
12	옥서	선연	116-3	전	40	40	옥서면 선연리 33	김귀채				
13	옥서	선연	116-2	전	354	9	옥서면 선연리 194	김미순				
14	옥서	선연	31-1	대	647	50	옥서면 선연리 135	김상순	근저당권	옥구읍 선제리 509-7(옥봉지소)	옥구농업협	
15	옥서	선연	31-4	전	63	63	옥서면 선연리 314	조복남 외4명				
16	옥서	선연	40-3	도	109	109	옥서면 선연리 522	고순옥				
17	옥서	선연	40-9	도	20	4	옥서면 선연리 522	고순옥				
18	옥서	선연	40-8	전	10	3	옥서면 선연리 41-2	유귀수				
19	옥서	선연	39-4	도	33	33	옥서면 선연리 522	고순옥				
20	옥서	선연	39-5	도	17	10	옥서면 선연리 522	고순옥				
21	옥서	선연	33-3	도	132	17	옥서면 선연리 32-1	장덕술				
22	옥서	선연	32-4	도	26	10	군산시 오룡동 857	김옥순				
23	옥서	선연	31-5	도	36	1	옥서면 선연리 502	박순녀	근저당권	옥구면 선제리 485-1	옥구단위농협조합	
24	옥서	선연	31-3	대	36	36	옥서면 선연리 314	조복남 외4명				
25	옥서	선연	30-2	도	30	8	옥서면 선연리 125	박철근				
26	옥서	선연	36-2	대	235	8	옥서면 선연 장원길 6	채용봉	근저당권	옥서면 선연리 1751-5	옥서새마을금고	
27	옥서	선연	34-8	전	34	1	옥서면 선연리 134	한용식				
28	옥서	선연	34-5	대	198	10	옥서면 선연리 34-5	이현복				
29	옥서	선연	34-3	도	89	22	옥서면 선연리 134	한용식				
30	옥서	선연	34-2	도	30	30	옥서면 선연리 134	한용식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지장물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면	리					주소	성명	
1	옥서	선연	41-9	가옥	슬라브	106.4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7-2	송인성	
				가옥	슬라브	4.9			
2	옥서	선연	36-2	담장	블록	8.0m	군산시 옥서면 선연 장원길 6	채용봉	
				수목	향나무3, 철쭉5	8주			
3	옥서	선연	34-5	담장	블록	13.3m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4-5	이현복	
				대문		4.8			
				수목	소나무1, 단풍나무1, 주목3	5			
4	옥서	선연	37-1	창고	스레트	49.5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47	이성룡	
				창고	슬라브	22.8			
5	옥서	선연	116-2	창고	슬라브	8.5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94	김미순	
				담장	블록	13.7m			
6	옥서	선연	31-1	대문		6.0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김상순	
				창고	판넬	109.1			
				담장	블록	24.3			
				건조기		2개소			